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5. 9. 2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04호로 2025년 9월 8일 최인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는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 육성 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 지원 신설(제25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9. 3.~2025. 9.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청소년 기본법」 1)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지도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2)제2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와 동에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구는 대림1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된 구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음.
- 협의회는 청소년 체험학습, 장학금 전달, 캠페인, 계도활동 등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3)제25조의 지원 규정은 지도위원 개인의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당·여비·교육 기회 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어 협의회에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1)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제2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3) 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5조제2항은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구·동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육성·선도·보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